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개정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개정 및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2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4)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입법예고(2017.3.30. ~ 4.19.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u></p>	<p><u>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u></p>